

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3월 13일, 임영순 의원 대표발의
- 회부일자 : 2018년 4월 9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4월 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임영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,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의원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근거를 마련함.(안 제2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의원이 사실상 구금되어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도

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, 이에 대한 지급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- 행정안전부에서는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지급제한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지급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
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
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
지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